

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25
------	------

2017. 11. 28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24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28.)상정, 제안설명,
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운영철)

1. 제안이유

가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
교내 교직원, 대학(원)생 자녀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
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업무·학업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

사업목적이 있음

나. 어린이집 운용에 따르는 제반업무 및 보육철학 제시, 예산계획 및 집행,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, 영유아 보호와 교육, 종사자 임용,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, 부모교육,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3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○ 추진필요성

- 다양한 경험과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책임경영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사고 대비 및 보육교직원 채용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활용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○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재산, 시설, 장비등의 구매 및 관리

-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 - 영유아 보호와 교육
 - 예산계획 및 집행
 -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 -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
-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소재지 : 서울시립대학교 내 과학기술관 북측
 - 규모 : 지상2층, 연면적 520.12㎡
 - 개원일 : '18. 3월('17. 11월 준공예정)
 - 모집정원 : 65명(8학급)

구 분	출생일 기준 (2018년 입소기준)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		'17.1.1. 이후 출생	'16.1.1~ 12.31	'15.1.1~ 12.31	'14.1.1~ 12.31	'12.1.1~ '13.12.31
교실수	5	1	1	1	1	1
학급수	8	2	2	2	1	1
아동수	65	6	10	14	15	20
교사수	8	2	2	2	1	1
기 타	원장 1, 조리사 1, 보조교사 1					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018~'202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

사. 소요예산 : 472,233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 (조직담당관-12490, 2017.09.26.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립대학교 내 교직원 및 대학(원)생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교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, 이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설립 추진 현황

- 정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명단을 공포하고,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.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위탁보육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제4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44조의3(이행강제금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,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-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(이하 “시립대”)는 직장어린이집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희망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※ 시립대의 상시 근로자수는 총 685명임.

(단위: 명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5년	2016년	비교(2017년)
합 계	90명	111명	96명	83명	74명
설치희망	31(34%)	73(66%)	68(71%)	59(71%)	57(77%)
미희망	59(66%)	38(34%)	28(29%)	24(29%)	17(23%)

- 시립대는 수요조사에 따라 교내 과학기술관 북쪽에 2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해 개원할 예정이며, 교직원의 자녀, 비전임교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자녀, 시립대 재학생의 자녀 순으로 입소가 가능함.
- 2017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, 총 대상이 74명, 설치희망인원이 57명인 것을 고려할 때, 직장 어린이집이기는 하나 시립대 교직원 자녀들의 입소 후, 공석이 생

길 경우 교내 대학원생 등 재학생들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.

〈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 개요〉

- 소재지 :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관 북측
- 시설규모 : 520.12㎡ (지상 2층)

층별	용도
지상 1층	보육실(0세반, 1세반, 2세반), 주방 및 식당 원장실(보건 및 대기공간 포함)
지상 2층	보육실(3세반, 4·5세반), 유희실 교사실 및 자료실

- 모집인원 : 65명 (교사수 11명)

구분	출생일 기준 (2018년 입소기준)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		'17.1.1. 이후 출생	'16.1.1~ 12.31	'15.1.1~ 12.31	'14.1.1~ 12.31	'12.1.1~ '13.12.31
교실수	5	1	1	1	1	1
학급수	8	2	2	2	1	1
아동수	65	6	10	14	15	20
교사수	8	2	2	2	1	1
기타	원장 1, 보육교사 8, 조리사 1, 보조교사 1					

- 위탁운영내용
 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- 현재 당초 11월에 완공 예정이던 어린이집의 준공이 한 달 정도 지연된 상태로,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통해 개원 예정 시기인 3월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립대의 노력이

필요해보임.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시립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의 소요예산으로 총 4억 7,2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 중 보육학생수에 비례하여 책정될 보육료 지원금(누리보조 및 보육교사 중식비)은 약 1억 5,336만원임.
-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1 이상인 경우, 어린이집의 교사, 조리원 인건비 일부 정부에서 지원됨.
- 보육료지원금을 제외한 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은 3억 1,857만원이며, 이는 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,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임.

〈2018년도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(안)〉

(단위 : 천원)

세 입 (국·시비 지원금)		세 출 (국·시비 지원금+사업주 부담금)	
합계	153,660천원	합계	472,233천원
사업수입 (보육료)	보육료(종일반 기준) 143,160천원 · 0세 430,000원×4명×12월= 20,640,000원 · 1세 378,000원×10명×12월= 45,360,000원 · 2세 313,000원×10명×12월= 37,560,000원 · 3세~ 220,000원×15명×12월= 39,600,000원	시설 운영 비	소계 363,609천원 계 313,609천원 금 여 227,756천원 · 시설장(15호봉) 2,977,900원×12월=35,734,800원 · 교사(5호봉)1,828,800원×8명×12월=175,564,800원 · 취사부(2호봉) 1,371,400원×12월=16,456,800원

			제수당 17,000천원 처우개선비, 직책급 5,040천원 사회보험 36,713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2,100천원 대체인력급여 2,000천원 후생경비 3,000천원
		관 리 비	공공요금, 수용비 등 50,000천원
보 조 금	누리보조(만3~5세) 8,100천원 · 45,000원×15명×12월=8,100,000원 보육교사 중식비(서울시) 2,400천원 · 25,000원×8명×12월=2,400,000원	운 영 비	계 70,249천원 급간식비 3,800원×50명×23일×12개월= 52,440천원 보육교사 중식비 25,000원×8명×12월= 2,400천원 교재교구비 1,000,000원×12월= 12,000천원 기타필요경비 3,409천원
			계 38,375천원 시설비 10,000천원 자산취득비 10,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,375천원

※ 보육아동 39명 기준 (만0세 4명, 만1세 10명, 만 2세 10명, 만3세 8명, 만4~5세 7명)

- 직장어린이집을 시립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, 어린이집의 관리 인원 및 보육교사 등 추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시립대 대학회계 직원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.
-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시설로 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,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실제로 서울시내 투자·출연기관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, 6곳의 어린이집 모두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바, 시립대 직장어린이집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사료되며,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〈서울시 및 투자·출연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기 관 명	어린이집 명칭	수탁기관명	위탁기간	위탁계약금액
서울교통공사	서울교통공사어린이집	한빛바른보육경영원	2017.09.01~ 2019.08.31	22,909
	대공원어린이집	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	2017.03.01~ 2020.02.29	0
서울시설공단	누비어린이집	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	2017.03.01~ 2019.02.28	31,680
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	올본어린이집	한솔교육희망재단	2016.03.02~ 2019.02.28	63,000
서울주택도시공사	으뜸어린이집	킨더슬레보육경영연구소	2017.03.01~ 2019.02.28	39,600
서울의료원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어린이집	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	2016.03.01~ 2018.02.28	396,000

※ 서울교통공사 ‘대공원어린이집’의 경우, 종교단체인 수탁자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여 위탁수수료 미지급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교내 교직원, 대학(원)생 자녀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업무·학업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음
- 나. 어린이집 운용에 따르는 제반업무 및 보육철학 제시, 예산계획 및 집행,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, 영유아 보호와 교육, 종사자 임용,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, 부모교육,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3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추진필요성
 - 다양한 경험과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책임경영

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사고 대비 및
보육교직원 채용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조직체계 활용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재산, 시설, 장비등의 구매 및 관리
-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- 영유아 보호와 교육
- 예산계획 및 집행
-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-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 재 지 : 서울시립대학교 내 과학기술관 북측
- 규 모 : 지상2층, 연면적 520.12 m^2
- 개 원 일 : '18. 3월('17. 11월 준공예정)
- 모집정원 : 65명(8학급)

구 분	출생일 기준 (2018년 입소기준)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		'17.1.1. 이후 출생	'16.1.1~ 12.31	'15.1.1~ 12.31	'14.1.1~ 12.31	'12.1.1~ '13.12.31
교실수	5	1	1	1	1	1
학급수	8	2	2	2	1	1
아동수	65	6	10	14	15	20
교사수	8	2	2	2	1	1
기 타	원장 1, 조리사 1, 보조교사 1					



사진설명	시설위치도
------	-------



사진설명	조감도
------	-----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018~'202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

사. 소요예산 : 472,233천원

○ 사업주 부담금(대학회계 시지원금) : 318,573천원

○ 보육료 지원금(국·시비 지원금) : 153,660천원

[산출근거]

- 보육아동 : 39명

(만0세 4명, 만1세 10명, 만 2세 10명, 만3세 8명, 만4~5세 7명)

- 종 사 자 : 11명 (원장 1명, 보육교사 8명, 보조교사 1명, 조리사 1명)

세 입		세 출	
계	153,660천 원	계	472,233천 원
사업수입 (보육료)	보육료(종일반 기준) 143,160천 원 · 0세 430,000원×4명×12월= 20,640,000원 · 1세 378,000원×10명×12월= 45,360,000원 · 2세 313,000원×10명×12월= 37,560,000원 · 3세~ 220,000원×15명×12월= 39,600,000원	시설운영비	363,609천 원
		(인건비)	계 313,609천 원 급여 227,756천 원 시설장(15호봉) 2,977,900원×12월=35,734,800원 교사(5호봉)1,828,800원×8명×12월=175,564,800원 취사부(2호봉) 1,371,400원×12월=16,456,800원 제수당 17,000천 원 처우개선비, 직책급 5,040천 원 사회보험 36,713천 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2,100천 원 대체인력 급여 2,000천 원 후생경비 3,000천 원
		(관리비)	공공요금,수용비 등 50,000천 원
보조금	누리보조(만3~5세) 8,100천 원 · 45,000원×15명×12월=8,100,000원 보육교사 중식비(서울시) 2,400천 원 · 25,000원×8명×12월=2,400,000원	운영비	70,249천 원 급간식비 3,800원×50명×23일×12개월= 52,440천 원 보육교사 중식비 = 2,400천 원 25,000원×8명×12월=2,400,000원 교재교구비 = 12,000천 원 1,000,000원×12월=12,000,000원 기타필요경비 = 3,409천 원
		시설비 및 자산취득	38,375천 원 시설비 = 10,000,000원 자산취득비 = 10,000,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= 18,375,000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 (조직담당관-12490, 2017.09.2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,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·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『영유아보육법』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김미경 (☎6490-6424)